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1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의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11.01.
- 시설규모 : 부지 13,500 m^2 , 건물 4,963.16 m^2 (지하 1층,지상 3층,대강당)
- 지원시설 : 청소년 전용공간,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5)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900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00백만원, 물건비 783백만원, 경상이전 185백만원, 자본지출 318백만원, 사업비 1,869백만원, 예비비 등 45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은 2019년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2012.7.9.)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020.1.1.~2022.12.31.)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11.01.
- 시설규모 : 부지 13,500㎡, 건물 4,963.16㎡ (지하 1층, 지상 3층, 대강당)
- 지원시설 : 청소년 전용공간,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900백만원(2019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지난 2003년부터 16년간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수련관은 자립형시설(수영장이 있어 수익성이 확보되는 청소년시설)로 민간위탁금 11억3천만원과 사업수익 등 총 34억원의 예산 규모로 장애청소년사업, 웹툰체험 등 청소년특화사업과 152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현황 >

- 재위탁 횟수 : 3회, 총 수탁기간 : 16년
 - 2003. 10. 25 : 1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신규 공개입찰)
 - 2006. 10. 25 : 2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재계약)
 - 2009. 10. 25 : 3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재위탁 공개입찰)
 - 2013. 01. 01 : 4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재계약)
 - 2015. 01. 01 : 5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재위탁 공개입찰)
 - 2018. 01. 01 : 6차 위탁협약 체결 (사)엔젤스헤이븐(재계약)

< 은평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민간위탁금	923,721	1,194,258	1,132,555

<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연도별 수입금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6.30.기준 (2019년예상)
수익금	3,395,395	3,891,212	2,130,784 (3,921,546)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 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¹⁾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즉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
|--------------------------|------------------------|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은평청소년수련관을 22년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시립 청소년시설지도·점검(청소년정책과, 2017년, 2018년)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 미비,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은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도 청소년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유무에 따라 수련 활동을 구분²⁾하고 있음.

○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서(서울시, 2019.03.13.~15)는 '수련관 카페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또는 사회교육 및 실습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부적정, 종사자 채용서류 누락, 회원신청서 관리 미흡 등 시설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행정역량 미흡 또는 고의적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모두 시정조치만으로 일괄 대응하고 있어, 재발방지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추후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최근 3년간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

- 수련관 카페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 신용카드는 시설명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카드 혜택을 위해 법인명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기관명의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인센티브는 연1회 이상 현금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세입조치 없이보관
- 시설규모, 지역여건을 감안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회원신청서 관리는 미흡함(다수가 이용하는 로비 데스크 사물함에 시건장치 없이 보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21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11.01.
- 시설규모 : 부지 13,500m², 건물 4,963.16m² (지하 1층, 지상 3층, 대강당)
- 지원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900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00백만원, 물건비 783백만원, 경상이전 185백만원, 자본지출 318백만원, 사업비 1,869백만원, 예비비 등 4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